LINC+사업단운영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「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: Leaders in INdustry-university Cooperation+)육성사업"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동명 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육성사업단(이하 '사업단'이라 한다)의 조 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육성 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관리·집행 등 사업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사업기간)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본 대학교와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.
- 제4조(기능)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지역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, 창의적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제반 행정 지원
 - 2. 특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,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,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과과정 운영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
 - 3. 교육·연구의 혁신에 기반한 지역사회 및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추구
 - 4.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창업교육센터와 연계하여 기업과 학생간의 적극적인 취 업관리를 통한 취업 활성화
 - 5.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종합적인 기업지원
 - 6. 학생 취업역량의 국제화와 기업의 해외진출 및 마케팅지원
 - 7. 기타 사업단의 발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
- 제5조(조직)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LINC+사업단장, 센터(산학교육혁신센터, 기업협업센터, 글로벌마케팅지원센터, 지역사회협업센터, R&BD센터, 창업교육거점센터)및 LINC+사업 성과관리를 총괄하는 성과관리팀을 둔다.
 - ② LINC+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단장은 대학의 교원중에서 교무위원급으로 임명하고, 대학 내 산학협력 관련 조직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한다.
 - ③ LINC+사업단장은 대학 내 산학협력 전담조직의 활동을 총괄한다.(개정 2018.07.23.)
 - ④ 각 센터에는 센터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둔다.
 - ⑤ LINC+성과관리팀은 사업운영지원, 사업비 총괄관리, 사업단 센터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.(개정 2018.07.23.)
- 제6조(위원회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 - 1. LINC+위원회
 - 2. LINC+자체평가위원회

- 3. LINC+사업단 운영위원회
- 4. LINC+사업 센터별 위원회
- 제7조(LINC+위원회) ① 사업단의 운영과 정책 및 전략수립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LINC+위원회를 둔다.
 - ② LINC+위원회는 총장, 단장,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-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다.
- 제8조(LINC+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성과의 객관적 평가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 -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-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,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다.
- 제9조(LINC+사업단 운영위원회) ① 사업단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LINC+사업단 운영위원회를 둔다.
 - ② LINC+사업단 운영위원회는 위원은 단장, 부단장, 센터장, 팀장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.
 -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,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⑤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다.
 -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사업단의 사업계획과 실적평가
 - 2.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
 - 3. 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
 - 4. 그 밖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
- 제10조(LINC+센터별 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과 정책 및 전략수립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별로 위원회를 둔다.
 - ② 센터별 위원회는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.
 -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⑤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다.
- 제11조(사업비 집행) ①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편성된 세부사업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사업비 주요 집행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「사업비 관리운영지침」을 적용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집행 기준에 따른다.(개정 2019.02.28.)
- 제12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교육부훈령 제209호」와 관련 법령 <u>및 동</u> 명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개정 2019.02.28.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타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일부터 「LINC사업단운영위원회규정」은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 시행되었던 사업단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<u>부 칙</u>

이 규정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